

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공무원 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

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공무원 근로자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7월 31일
국립고궁박물관장

1. 최종합격자

분야	응시번호	성명	휴대전화 뒷자리
소장품 관리	9	남○민	9818

2. 임용일: 2023. 8. 7.(월)

3. 최종합격자 서류 제출 안내

가. 제출기한: 2023. 8. 7.(월)

나. 제출장소: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

다. 제출서류

- 채용신체검사서 1부(건강검진대체 통보서로 대체 가능)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* 붙임1 양식(3쪽)에 작성
- 주민등록등·초본 각 1부 *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
-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(상세) 각 1부
- 최종학력증명서 1부
- 경력증명서 1부

- 결격사유확인서 1부 * 붙임2 양식(4쪽)에 작성
- 공정채용 확인서 1부 * 붙임3 양식(5쪽)에 작성
- 반명함 사진 이미지 파일(jpg) * 이미지 파일이 없는 경우 사진 3매 제출
- 통장사본 1부
- 장애인, 국가유공자, 의료수급대상자의 경우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

4. 공지사항

- 가. 합격통보 후에라도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, 소명절차를 거친 후 합격취소가 가능합니다.
- 나. 신원조회,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실시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,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자 및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.
- 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-3701-7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.
 2. 결격사유확인서 1부.
 3. 공정채용 확인서 1부. 끝.

(붙임 2)

결격사유 확인서

- 성 명:
- 생년월일:

본인은 문화재청 공무원 등 근로자로 최종 임용되기 전 다음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였으며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기관으로부터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

임용 후 확인서 내용과 달리 사후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20 . . .

확인자: (인)

문화재청장 귀하

